

학교법인 정의학원 제357차 이사회 회의록

회의소집일자		2025.6.16.	
이사정수	12명	재적이사	12명

1. 일 시 : 2025년 6월 24일(화) 정오
2. 장 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 키친
3. 심의안건

가. 보고

- 1) 서울여자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후속 진행 보고
- 2) 서울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1학기 주요 학사 보고
- 3) 설치학교 교원 및 직원 인사보고
- 4) 설치학교 안전관리 점검 보고
- 5) (제355차 이사회 후속 보고) 학내소요사태 관련 피해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보고
- 6) (제355차 이사회 후속 보고) 앤더슨기념관 안전점검에 따른 철거(멸실)관련 재검토 요청의 건

나. 안건

- 1) 학교법인 정의학원 정관 개정(안)의 건
- 2) 학교법인 정의학원 이사 정수 증원(안)의 건
- 3) 학교법인 정의학원 임원 선임의 건
- 4)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의 건
- 5) 서울여자대학교 규정 개정(안)의 건
- 6) 서울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2학기 교원 임면 제청의 건(신규, 승진 및 재임용)
- 7) 서울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2학기 직원 임면 제청의 건
- 8)
- 9)
- 10) 화랑초등학교 2025학년도 2학기 직원 및 2026학년도 교원 채용계획(안)의 건
- 11) 화랑초등학교 학교운영규정 개정(안)의 건
- 12)
- 13)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임의 건
- 14) 기타사항

4. 임원 참석내용

간서명			
-----	---	---	--

- 총 임원 : 이사 12명, 감사 2명
- 참석이사(11명) : 김경진, 이윤선, 김희원, 홍기숙, 신인숙, 이영선, 김미순, 최효녀, 유갑준, 이광자, 임성빈
- 불참이사(1명) : 김완숙
- 출석감사(1명) : 김세진
- 불참감사(1명) : 권영환

5. 출석직원 : 정복자 법인사무국장

6. 회의경과 :

- 1) 말씀선포 : 의장이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읽고 말씀하다.
- 2) 개회기도 : 최효녀 이사
- 3) 회원점명 및 개회선언

정복자 법인사무국장이 회원을 점명하여 재적이사 12인 중 11인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니 의장이 제357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7. 전회의록 보고 : 정복자 법인사무국장이 전 회의록을 보고하니 의장이 전 회의록에 대하여 질 문이나 수정할 내용의 여부를 묻고 그대로 받기로 하여 이영선 이사 동의와 최효녀 이사 재 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참석이사 전원 만장일치 「가」로 제356차 이사회 회의록 을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8. 안건심의

【보고1】 서울여자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후속 진행 보고

의장이 정복자 법인사무국장에게 보고하게 하니 정복자 법인사무국장이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 여자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후속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하다.

【보고2】 서울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1학기 주요 학사 보고

의장이 이윤선 총장에게 보고하게 하니 이윤선 총장이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2025 학년도 1학기 주요 학사 내용을 보고하다.

【보고3】 설치학교 교원 및 직원 인사 보고

의장이 이윤선 총장에게 보고하게 하니 이윤선 총장이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교원 및 직원 인사사항에 대해 보고하다. 이어서 정복자 법인사무국장에게 보고하게 하니 정복자 법 인사무국장이 화랑초등학교 직원 인사사항에 대해 보고하다.



【보고4】 설치학교 안전관리 점검 보고

의장이 정복자 법인사무국장에게 보고하게 하니 정복자 법인사무국장이 자료를 중심으로 설치 학교 안전관리 점검 사항에 대해 보고하다.

【보고5】 (제355차 이사회 후속 보고) 학내소요사태 관련 피해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보고

의장이 이윤선 총장에게 보고하게 하니 이윤선 총장이 자료를 중심으로 지난 제355차 학교법인 정의학원 이사회 후속 보고 사항으로, 서울여자대학교 학내소요사태 관련 피해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보고하다.

【보고6】 (제355차 이사회 후속 보고) 앤더슨기념관 안전점검에 따른 철거(멸실)관련 재검토 요청의 건

의장이 이윤선 총장에게 보고하게 하니 이윤선 총장이 자료를 중심으로 지난 제355차 학교법인 정의학원 이사회 후속 보고 사항으로, 앤더슨기념관 안전점검에 따른 철거(멸실)관련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하다.

【안건1】 학교법인 정의학원 정관 개정(안)의 건

의장이 정복자 법인사무국장에게 설명하도록 하니 정복자 법인사무국장이 자료를 중심으로 학교법인 정의학원 이사 정수 증원(안) 및 이사 임기 변경, 이사 정수 증원에 따른 개방이사 및 교육경험이사 증원 등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다.

이어서 이윤선 총장에게 설명하도록 하니 이윤선 총장이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다. 기획처 산하의 대외협력실(대외협력팀)을 총장직속기구로 개편하는 안을 설명하다.

의장이 정관 개정(안) 대하여 참석 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증원 및 임기 변경 등에 관하여 유갑준 이사가 동의하고 김미순 이사가 재청하여 의장이 동의·재청에 이의를 묻고 「가·부」로 결의를 물으니 참석이사 전원 만장일치 「가」로 결의하다.

의장이 총장직속기구 개편에 대한 정관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을 발의하니 신인숙 이사가 동의하고 임성빈 이사가 재청하여 의장이 동의·재청에 이의를 묻고 「가·부」로 결의를 물으니 참석이사 전원 만장일치 「가」로 결의하다.

* 붙임 : 학교법인 정의학원 정관 개정 내역

【안건2】 학교법인 정의학원 이사 정수 증원(안)의 건

의장이 정복자 법인사무국장에게 설명하도록 하니 정복자 법인사무국장이 자료를 중심으로 학교법인 정의학원 이사 정수 증원(안)은 이사 정수를 12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증원은



유지이사 2인과 개방이사 1인을 증원함을 설명하다.

의장이 참석 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학교법인 정의학원 이사 정수 증원(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을 발의하니 유갑준 이사가 동의하고 김미순 이사가 재청하여 의장이 동의·재청에 이의를 묻고 「가·부」로 결의를 물으니 참석이사 전원 만장일치 「가」로 결의하다.

【안건3】 학교법인 정의학원 임원 선임의 건

의장이 유지이사인 신인숙 이사의 임기가 2025년 7월 19일까지임을 설명하다. 의장이 신인숙 이사에게 퇴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신인숙 이사가 퇴장하다.

의장이 신인숙 이사의 연임 여부에 대해 참석 이사들과 논의하여 투표로 진행하기로 하다.

투표를 실시한 결과 연임 찬성 표, 반대 표로 신인숙 이사의 연임이 되었으므로 발표하고, 퇴장하였던 신인숙 이사를 회의장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다.

의장이 뒤이어 개방이사인 김미순, 최효녀 이사의 임기가 2025년 7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학교법인 정의학원 정관 제24조의4에 의거 개방임원추천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복수추천하였음을 설명하다.

현 이사	추천 대상자	성 별	생년월일	출석교회 및 직분	대 표 경 력
김미순	김미순	여		제주영락교회 장로	前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제50대)
	은정화	여		방림교회 장로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제52대)
최효녀	이난숙	여		천성교회 장로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제1부회장
	최효녀	여		신성북교회 장로	前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제51대)

(가나다순)

의장이 우선 김미순 이사에게 퇴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김미순 이사가 퇴장하다. 의장이 개방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김미순, 은정화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다.

투표를 실시한 결과 김미순 표, 은정화 표로 의장이 김미순 이사가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개방이사로 연임하는 것을 발표하고, 퇴장하였던 김미순 이사를 회의장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다.

의장이 이어서 최효녀 이사에게 퇴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최효녀 이사가 퇴장하다. 의장이 개방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이난숙, 최효녀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다.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난숙 표, 최효녀 표로 최효녀 이사가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개방이사로 연임하는 것을 발표하다. 신인숙, 김미순, 최효녀 이사의 연임에 대하여 유갑준 이사가 동의하고 이윤선 이사가 제청하여 의장이 동의·재청에 이의를 묻고 「가·부」로 결의를 물으니 참석이사 전원 만장일치 「가」로 결의하다. 퇴장하였던 최효녀 이사를 회의장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다.

득표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하다. 선임된 이사의 임기



는 다음과 같다.

* 이사회 승인내역

직 위	성 명	임 기	기 간	비 고
이 사	신인숙	2025.07.20. ~ 2029.07.19.	4년	유지이사
이 사	김미순	2025.07.31. ~ 2029.07.30.	4년	개방이사
이 사	최효녀	2025.07.31. ~ 2029.07.30.	4년	개방이사

【안건4】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의 건

의장이 정복자 법인사무국장에게 설명하도록 하니 정복자 법인사무국장이 자료를 중심으로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다.

서울여자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교수위원 추천 방법 재검토를 요청하여 지난 제356차 이사회(2025.4.24.)에 보고된 사항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임을 설명하다.

의장이 참석 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보류하기로 발의하니 신인숙 이사가 동의하고 홍기숙 이사가 재청하여 의장이 동의·재청에 이의를 묻고 「가·부」로 결의를 물으니 참석이사 전원 만장일치 「가」로 결의하다.

【안건5】 서울여자대학교 규정 개정(안)의 건

의장이 이운선 총장에게 설명하도록 하니 이운선 총장이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과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다.

의장이 참석 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서울여자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과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을 발의하니 김희원 이사가 동의하고 김미순 이사가 재청하여 의장이 동의·재청에 이의를 묻고 「가·부」로 결의를 물으니 참석이사 전원 만장일치 「가」로 결의하다.

* 붙임 : 서울여자대학교 규정 개정 내역

【안건6】 서울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2학기 교원 임면 제청의 건(신규, 승진 및 재임용)

의장이 이운선 총장에게 설명하도록 하니 이운선 총장이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2학기 교원 신규임용 및 승진, 재임용 사항을 설명하다.

의장이 교원 신규임용 건에 대해 참석이사의 의견을 묻고 인문대학 메타버스융합콘텐츠전공은 신입교원을 선발하지 않기로 하고, 그 외 전공은 1순위자를 선발하되 미래산업융합대학 데이터



사이언스학과의 경우는 1순위자와 2순위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하다. 단, 1순위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2순위자를 선발하는 것에 대하여는 총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발의하니 임성빈 이사가 동의하고 신인숙 이사가 재청하여 의장이 동의·재청에 이의를 묻고 「가·부」로 결의를 물으니 참석이사 전원 만장일치 「가」로 결의하다.

의장이 승진 및 재임용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을 발의하니 최효녀 이사가 동의하고 김미순 이사가 재청하여 의장이 동의·재청에 이의를 묻고 「가·부」로 결의를 물으니 참석이사 전원 만장일치 「가」로 결의하다. 단, 승진 기준에 대하여 개선방향을 연구하는 것과 교목실의 교목에 대하여는 예배와 실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승진 평가 조건을 달리하도록 하는 것을 총장에게 위임하다.

* 붙임 : 서울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2학기 교원 임면 내역 (신규, 승진 및 재임용)

【안전7】 서울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2학기 직원 임면 제청의 건

의장이 이윤선 총장에게 설명하도록 하니 이윤선 총장이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2학기 직원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다.

의장이 참석 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을 발의하니 최효녀 이사가 동의하고 김미순 이사가 재청하여 의장이 동의·재청에 이의를 묻고 「가·부」로 결의를 물으니 참석이사 전원 만장일치 「가」로 결의하다.

* 붙임 : 서울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2학기 직원 임면 내역 (신규, 승진)

【안전8】

본 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하다.

【안전9】

간서명			
-----	---	---	---

본 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하다.

【안건10】 화랑초등학교 2025학년도 2학기 직원 및 2026학년도 교원 채용계획(안)의 건

의장이 정복자 법인사무국장에게 설명하도록 하니 정복자 법인사무국장이 자료를 중심으로 화랑초등학교 2025학년도 2학기 직원 및 2026학년도 교원 채용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다. 교원의 의원면직으로 인한 결원으로 학급담임교사 1명 및 9급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건임을 설명하다.

의장이 참석 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화랑초등학교 2025학년도 2학기 직원 및 2026학년도 교원 채용 기본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을 발의하니 이영선 이사가 동의하고 이운선 이사가 재청하여 의장이 동의·재청에 이의를 묻고 「가·부」로 결의를 물으니 참석이사 전원 만장일치 「가」로 결의하다.

* 붙임 : 화랑초등학교 2025학년도 2학기 직원 및 2026학년도 교원 채용계획

【안건11】 화랑초등학교 학교운영규정 개정(안)의 건

의장이 정복자 법인사무국장에게 설명하도록 하니 정복자 법인사무국장이 자료를 중심으로 화랑초등학교 학교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다. 정관 제97조(하부조직)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임을 설명하다.

의장이 참석 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화랑초등학교 학교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을 발의하니 신인숙 이사가 동의하고 최효녀 이사가 재청하여 의장이 동의·재청에 이의를 묻고 「가·부」로 결의를 물으니 참석이사 전원 만장일치 「가」로 결의하다.

* 붙임 : 화랑초등학교 학교운영규정 개정내역



【안전12】

본 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하다.

【안전13】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임

의장이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 법인 제357차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이사는 이윤선, 김희원, 홍기숙 이사를 선임하고 간서명은 도장을 찍는 것으로 발의 하니 참석 이사 전원 만장일치「가」로 결의하여 의장이 학교법인 정의학원 제357차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로 이윤선, 김희원, 홍기숙 이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하다.

【안전14】 기타사항

1. 이윤선 총장이 서울여자대학교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구성원들과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캠퍼스 내 안전대책 및 시설안전팀의 공간,
안전관리자(정규직) 채용 등, 처장단회의에서 안전대책을 논의 중에 있음을 보고하다.
 2. 차기 이사회 : 2025년 12월 11일(목) 11시
9. 폐 회 : 의장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폐회할 것을 물으니 전원 폐회하기를 동의하니 의장이 폐회기도하고 14시 30분에 학교법인 정의학원 제357차 이사회를 폐회하다.

2025년 6월 24일



2025년 6월 24일

직 위	성 명	서 명
이 사 장	김 경 진	김 경 진
이 사	이 윤 선	이 윤 선
이 사	김 희 원	김 희 원
이 사	김 완 숙	불 찬
이 사	홍 기 숙	홍 기 숙
이 사	신 인 숙	신 인 숙
이 사	이 영 선	이 영 선
이 사	김 미 순	김 미 순
이 사	최 효 녀	최 효 녀
이 사	유 갑 준	유 갑 준
이 사	이 광 자	이 광 자
이 사	임 성 빈	임 성 빈
감 사	권 영 환	불 찬
감 사	김 세 진	김 세 진



(안건 제1호 붙임 : 학교법인 정의학원 정관 개정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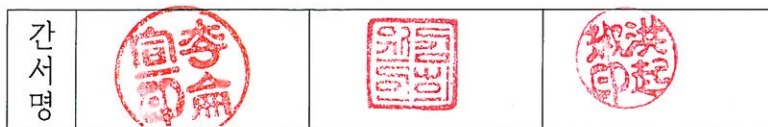
현 행	개 정
<p>제2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p> <p>1. 이사 <u>12인</u> (이사장 1인 포함)</p> <p>2. 감사 2인</p> <p>제2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p> <p>1. <u>이사 4년</u></p> <p>2. 감사 3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p> <p>② <삭제></p> <p>제24조의3 (개방임원의 정수) ① 이 법인의 개방 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p> <p>1. 이사 - <u>3인</u></p> <p>2. 감사 - 1인</p> <p>(중 략)</p> <p>제90조의2(총장직속기구)</p> <p>① 총장직속기구로 교목실, <u>비서실, 데이터혁신실</u>, 인권센터를 둔다.</p> <p>② <u>비서실에는 비서팀을 두며</u>,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p>	<p>제2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p> <p>1. 이사 <u>15인</u> (이사장 1인 포함)</p> <p>2. 감사 2인</p> <p>제2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p> <p>1. <u>이사 4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u></p> <p>2. 감사 3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p> <p>② <삭제></p> <p>제24조의3 (개방임원의 정수) ① 이 법인의 개방 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p> <p>1. 이사 - <u>4인</u></p> <p>2. 감사 - 1인</p> <p>(중 략)</p> <p>제90조의2(총장직속기구)</p> <p>① 총장직속기구로 교목실, <u>비서실, 대외협력실, 데이터혁신실</u>, 인권센터를 둔다.</p> <p>② <u>비서실에는 비서팀, 대외협력실에는 대외협력팀, 데이터혁신실에는 데이터혁신팀을 두며</u>,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p> <p>부 칙 (이사회결의/2025.6.24.)</p> <p>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0조의2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제23조(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후 선임될 경우 제2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하다. (8년 가능) 단, 총장은 예외로 한다.</p>



(안건 제5호 붙임 : 서울여자대학교 규정 개정 내역)

1. 직제규정

현 행	개 정
<p>제5조(총장직속기구)</p> <p>① 총장직속기구로 <u>교목실, 비서실 비서팀, 데이터 혁신실 데이터혁신팀</u>, 성과환류데이터센터, 인권센터를 둔다.</p> <p>② <u>교목실, 데이터혁신실에</u> 실장을, 성과환류데이터센터, 인권센터에 센터장을, <u>비서실 비서팀, 데이터혁신팀에</u> 팀장을 둔다.</p> <p>③ 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 교무위원회, 교수회를 두며, 기구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p>	<p>제5조(총장직속기구)</p> <p>① 총장직속기구로 <u>교목실, 비서실 비서팀, 대외협력실 대외협력팀, 데이터혁신실 데이터혁신팀</u>, 성과환류데이터센터, 인권센터를 둔다.</p> <p>② <u>교목실, 대외협력실, 데이터혁신실에</u> 실장을, 성과환류데이터센터, 인권센터에 센터장을, <u>비서실 비서팀, 대외협력팀, 데이터혁신팀에</u> 팀장을 둔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기획처)</p> <p>기획처에 <u>기획예산팀, 대외협력팀, 정보전산원 정보전산팀</u>을 둔다.</p>	<p>제11조(기획처)</p> <p>기획처에 <u>기획예산팀, 전략평가팀, 정보전산원 정보전산팀</u>을 둔다.</p>



2. 교원인사규정

현행				개정안				비고	
[별표 1] 초임호봉 획정시 연구 및 교육경력 환산기준표				[별표 1] 초임호봉 획정시 연구 및 교육경력 환산기준표					
구분	경력구분	경력사항	환산율	구분	경력구분	경력사항	환산율	순서 교체	
연구 경력	학위취득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100% (최대 3년 이내)	학위취득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100% (최대 3년 이내)	100% (최대 2년 이내) 100% (최대 5년 이내)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100% (최대 2년 이내)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100% (최대 2년 이내)			
		석·박사 통합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석사학위 없이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100% (최대 5년 이내)		석·박사 통합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석사학위 없이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100% (최대 5년 이내)			
	연구원	<삭제>	<삭제>	<삭제>	연구원	<삭제>	<삭제>		<삭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관할청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력, Post-Doc 경력	50% (단, 박사학위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관할청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력 <삭제>		50% (단, 박사학위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신 설)	(신 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관할청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의 학교에서 Post-Doc으로 상근한 경력		50% (단, 박사학위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신 설)	(신 설)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의 학교에서 임용권자의 임명을 받아 전임연구원/연구교수로 상근한 경력		30~50% (단, 박사학위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 임용권자 및 업무 특성 고려			
교육 경력	교원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의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전임교원: 100% · 비전임교원(겸임·초빙교원 등) = 주당수업시수 9시간 미만: 30% = 주당수업시수 9시간 이상: 50% · (시간)강사: 30%	교원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의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전임교원: 100% · 비전임교원(겸임·초빙교원 등) = 주당수업시수 9시간 이상: 50% = 주당수업시수 9시간 미만: 30% · (시간)강사: 30%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제 교원 포함)	50% *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제 교원 포함)	50% *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유치원 교원 또는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갖추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30% *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유치원 교원 또는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갖추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30% *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간서명   

현행

개정안

비고

구분	경력 구분	경력사항	환산율
산업체 (실무) 경력 및 유사 경력	국가 기관 및 공공 단체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 (시설 및 준경력 포함)에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무급, 비상근 공무원 경력 제외) ※ 준 경력은 병직상의 실역복무기간만 인정하되 아래 경력은 제외함. 1. 특례보충역의 해당전문분야 의무종사기간 2.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의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3. 무관후보생 경력	· 공무원 경력: 70% · 준 경력: 100%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에서 전임으로 상근한 경력 ※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따른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을 말함.	30%
	민간 기업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민간산업체에서 관련이 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20%
종교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에서 목사로서 상근한 경력	30% ※ 기독교학과 또는 관련과목 담당 교원에 한함	

구분	경력 구분	경력사항	환산율
산업체 (실무) 경력 및 유사 경력	국가 기관 및 공공 단체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 (시설 및 준경력 포함)에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무급, 비상근 공무원 경력 제외) ※ 준 경력은 병직상의 실역복무기간만 인정하되 아래 경력은 제외함. 1. 특례보충역의 해당전문분야 의무종사기간 2.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의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3. 무관후보생 경력	· 준 경력: 100% · 공무원 경력: 70%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에서 전임으로 상근한 경력 ※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따른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을 말함.	30%
	민간 기업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민간산업체에서 관련이 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20~50%
종교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에서 목사로서 상근한 경력	30% ※ 기독교학과 또는 관련과목 담당 교원에 한함	

순서
교체

[비고]

1. <삭제>
2. 동일한 기간에 둘 이상의 기관에서의 연구(산업체 경력 포함) 또는 교육경력은 그 중 하나만 인정함
3. 상기 경력 환산기준표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력만을 신입교원의 연구 및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며, 인정된
경력 1년을 1호봉으로 함(1년 미만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4. 석·박사학위 취득경력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인정함
5. 석·박사학위 취득경력을 제외한 연구 및 교육, 산업체 등 경력은 환산경력기준으로 최대 5년 이내에서 인
정함(단, 특별 및 경력직 채용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6. 상기 경력 환산기준표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함

[비고]

1. <삭제>
2. 기간이 중복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 환산율이 높은 경력을 우선 인정함
3. 상기 경력 환산기준표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력만을 신입교원의 경력으로 인정하되 6개월 미만의 단위경
력은 인정하지 않으며(단,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의 학교에서의 연구 및 교육 경력은 제외),
인정된 경력 1년을 1호봉으로 함(1년 미만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4. 석·박사학위 취득경력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인정하며, 동일한 수준의 학위가 2개 이상인 교원에 대하여는 대학
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학위별 최대인정기간내에서 인정 가능함
5. 석·박사학위 취득경력을 제외한 연구 및 교육, 산업체 등의 경력은 최대인정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음(단,
특별 및 경력직 채용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6. 상기 경력 환산기준표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
함

간
서
명






현행	개정안	비고
	<p>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5 제357차 법인이사회> (초임호봉 획정시 연구 및 교육경력 환산 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한다.</p>	

간서명			
-----	---	---	---

3. 교직원보수규정

현 행	개 정
<p>제5조(초임호봉의 확정) ① 교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확정한다.</p> <p>② <삭제></p> <p>③ 정년제 전임교원의 초임호봉은 「<u>교원인사규정</u>」에서 정한 연구 및 교육경력 환산기준표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로 확정한다.</p> <p>④ (삭제)</p> <p>⑤ ~ ⑥ (생략)</p> <p>⑦ 직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에 따라 확정하며 확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p>	<p>제5조(초임호봉의 확정) ① 교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확정한다.</p> <p>② <삭제></p> <p>③ 정년제 전임교원의 초임호봉은 <u>3호봉을 기본호봉으로 하여, 「교원인사규정」 [별표 1]에서 정한 연구 및 교육경력 환산기준표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를 합산하여 확정하되, 초임호봉의 확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u></p> <p>④ (삭제)</p> <p>⑤ ~ ⑥ (현행과 동일)</p> <p>⑦ 직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에 따라 확정하며 확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p> <p>부 칙</p> <p>(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제3항 개정 < 제357차 이사회 >)</p> <p>(2) (초임호봉 확정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한다.</p>

현 행	개 정
<p>제12조(보수계산) ① <u>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u></p> <p>② (생략)</p> <p>③ <u>2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는 면직 직전일까지 일할계산하되 2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이 월중에 면직하게 되는 경우는 월 보수전액을 지급</u></p>	<p>제12조(보수계산) ① <u>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 ---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하게 -----</u> -----.</p>

간 서 명			
-------------	---	---	--

현 행		개 정																	
<p>한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u>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 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일할계산한다.</u></p> <p>④~⑪ (생 략)</p> <p>[별표3] 각종 수당의 지급 대상</p> <table border="1"> <thead> <tr> <th>수당명</th> <th>지급대상</th> </tr> </thead> <tbody> <tr> <td></td> <td>이상 생략</td> </tr> <tr> <td>자녀입학축하금</td> <td>지급일 기준 대학교에 진학한 자녀가 있는 총장, 정년제전임교원, 정규직원, 무기계약직원</td> </tr> <tr> <td></td> <td>이후 생략</td> </tr> </tbody> </table>		수당명	지급대상		이상 생략	자녀입학축하금	지급일 기준 대학교에 진학한 자녀가 있는 총장, 정년제전임교원, 정규직원, 무기계약직원		이후 생략	<p>--- --- --- --- --- <u>면직되는 경우는 일할계산한다.</u></p> <p>④~⑪ (현행과 같음)</p> <p>[별표3] --- --- --- --- ---</p> <table border="1"> <thead> <tr> <th>수당명</th> <th>지급대상</th> </tr> </thead> <tbody> <tr> <td></td> <td>이상 생략</td> </tr> <tr> <td>---</td> <td>--- --- --- --- --- 총장, 계약제 정년제전임교원, --- 전임교원, 정규직원, ---</td> </tr> <tr> <td></td> <td>이후 생략</td> </tr> </tbody> </table>		수당명	지급대상		이상 생략	---	--- --- --- --- --- 총장, 계약제 정년제전임교원, --- 전임교원, 정규직원, ---		이후 생략
수당명	지급대상																		
	이상 생략																		
자녀입학축하금	지급일 기준 대학교에 진학한 자녀가 있는 총장, 정년제전임교원, 정규직원, 무기계약직원																		
	이후 생략																		
수당명	지급대상																		
	이상 생략																		
---	--- --- --- --- --- 총장, 계약제 정년제전임교원, --- 전임교원, 정규직원, ---																		
	이후 생략																		

(안전 제6호 붙임 : 서울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2학기 교원 임면 내역(신규, 승진 및 재임용))

1. 신규임용

가. 정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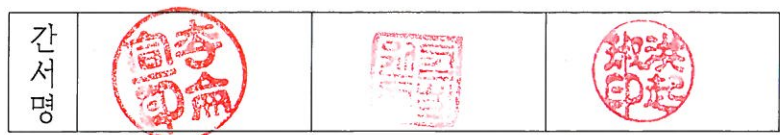
소 속	성 명	임용직위	기 간	비 고

나. 계약제

소 속	성 명	임용직위	기 간	비 고

2. 승진 및 재임용

가. 정년제



1) 승진




소 속	성 명	현직위	임용직위	기 간	비 고

2) 재임용

소 속	성 명	현직위	임용직위	기 간	비 고

나. 계약제

소 속	성 명	현직위	임용직위	기 간	비 고

간서명			
-----	---	---	---

소 속	성 명	현직위	임용직위	기 간	비 고

다. 트랙전환임용

소 속	성 명	현직위	임용직위	기 간	비 고

(안전 제7호 붙임 : 서울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2학기 직원 임면 내역(신규, 승진))

1. 신규임용

성 명	직종 및 직급	근무부서	발령일

2. 승진

성명	소속 부서	직종 및 직급	발령 내역	발령일

(안전 제10호 붙임 : 화랑초등학교 2025학년도 2학기 직원 및 2026학년도 교원 채용계획)

1. 2025학년도 2학기 신규직원채용 기본계획

구 분	내 용	비고
채용분야	전산·방송 관련 업무 및 관련 기자재 관리	
채용인원	9급 1명	
모집공고 기간	2025.10.1.(수) ~ 2025.11.3.(월) 정오까지	

간 서 명			
-------------	---	---	--

구분	내용	비고
공고 매체	서울시교육일자리포털	
공개전형 절차	1차(서류전형/5배수) → 2차(심층면접/3배수) → 3차(이사회결)	
공개전형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서류평가 : 2025.11.4.(화) 2차 심층면접 : 2025.11.7.(금) 	

2. 2026학년도 신규교원채용 기본계획

구분	내용	비고
채용분야	학급담임교사	
채용인원	정규교원 1명 (교원 의원면직으로 인한 결원)	
모집공고 기간	2025.10.13.(월) ~ 2025.11.12.(수) 정오까지	
공고 매체	서울시교육일자리포털	
공개전형 방법	1차(필기 및 서류전형/5배수) → 2차(심층전형/3배수) → 3차(이사회결)	
공개전형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필기평가 : 2025.11.15.(토) 2차 수업시연 및 면접 평가 : 2025.11.19.(수) 	

(안전 제11호 붙임 : 화랑초등학교 학교운용규정 개정 내역)

현행	개정																								
<p>제15조(승진) ① 근속승진의 경우 대상은 7급 이하 직원으로 하며 당해 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며, 직급별 근속 승진 재직기간을 충족한 경우로 한다.</p> <p>1. 승진소요 최저연수</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직원</th> </tr> </thead> <tbody> <tr> <td>5급</td> <td></td> </tr> <tr> <td>6급에서 5급</td> <td>2년 이상</td> </tr> <tr> <td>7급에서 6급</td> <td>1년 이상</td> </tr> <tr> <td>8급에서 7급</td> <td>1년 이상</td> </tr> <tr> <td>9급에서 8급</td> <td>1년 이상</td> </tr> </tbody> </table>	구분	직원	5급		6급에서 5급	2년 이상	7급에서 6급	1년 이상	8급에서 7급	1년 이상	9급에서 8급	1년 이상	<p>제15조(승진) ① 근속승진의 경우 대상은 7급 이하 직원으로 하며 당해 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며, 직급별 근속 승진 재직기간을 충족한 경우로 한다.</p> <p>1. 승진소요 최저연수</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직원</th> </tr> </thead> <tbody> <tr> <td>5급</td> <td></td> </tr> <tr> <td>6급에서 5급</td> <td>2년 이상</td> </tr> <tr> <td>7급에서 6급</td> <td>1년 이상</td> </tr> <tr> <td>8급에서 7급</td> <td>1년 이상</td> </tr> <tr> <td>9급에서 8급</td> <td>1년 이상</td> </tr> </tbody> </table> <p>부 칙 (이사회결/2025.6.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p>	구분	직원	5급		6급에서 5급	2년 이상	7급에서 6급	1년 이상	8급에서 7급	1년 이상	9급에서 8급	1년 이상
구분	직원																								
5급																									
6급에서 5급	2년 이상																								
7급에서 6급	1년 이상																								
8급에서 7급	1년 이상																								
9급에서 8급	1년 이상																								
구분	직원																								
5급																									
6급에서 5급	2년 이상																								
7급에서 6급	1년 이상																								
8급에서 7급	1년 이상																								
9급에서 8급	1년 이상																								

간서명			
-----	---	---	---